



문서번호	지역경제과-40818
결재일자	2015. 12. 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536호

★주무관	유통관리팀장	지역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홍성준	김평선	김광호	박기웅	전결 12/30 이비오
협 조	기획예산과장	이윤영		
	법률전문관	代이상수		
	법제팀장	이상수		
	주무관	김혜선		

**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
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**



성동구

(지역경제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12. 12. 11.)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I 개정 이유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
(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)
[개정일자: 2012. 12. 11.]
- 그 밖에 법 개정 필요 사항의 반영 및
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II 주요 개정내용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(안 제2조제3호, 제4장의 제목, 제 16조 및 같은 조의 제목, 제18조 및 같은 조 제1호)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변경(안 제18조의 제목)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자로 변경(안 제18조 제2호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Ⅲ

추진 일정

2015. 12. 31. ~ 1. 21.: 입법예고(20일간) 및 의견접수

※ 입법예고 기간 중

-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,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,
성별영향평가(보육가족과)

2016. 1. 22.: 숙독회의

2016. 1. 22.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

2016. 1. 26.(예정): 조례규칙심의회 개최(기획예산과)

2016. 2.: 구의회 심의 및 조례 공포

Ⅳ

기타 사항

예산조치: 별도 예산 필요없음

관련부서 사전협의: 필요없음

붙임: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